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중대범죄 수사역량 및 독립성·공정성을 갖춘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732호)

▣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239호)

2026. 3.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Ⅰ. 개요 ····· 1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1. 제안 경위 ·····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3. 회부 경과 ····· 5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1. 제안 경위 ····· 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6

Ⅱ. 검토의견 ····· 12

1. 이용우의원안에 대한 총괄 검토 ····· 12

가. 배경 ····· 12
나. 이용우의원안의 구성·주요내용 ····· 14
다. 이용우의원안에 대한 검토 ····· 18
라. 해외 사례: 영국 등 ····· 20

2. 이용우의원안에 대한 조문별 검토 ····· 23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23

나. 권한 남용의 금지(안 제3조) ····· 29

다. 조직 ····· 31

1) 중대범죄수사청 등의 설치(안 제4조) ····· 31

2) 중대범죄수사청장(안 제5조) ····· 32

3)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명자격(안 제6조) ····· 37

4)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안 제7조) ····· 39

5) 차장(안 제8조) ····· 41

6) 직제(안 제9조) ····· 43

7) 지역중대범죄수사청장(안 제10조) ····· 44

8) 직제(안 제11조) ····· 45

9) 수사관(안 제12조) ····· 46

10) 정원(안 제20조) ····· 46

11) 중대범죄수사청 직원(안 제25조) ····· 48

12) 수사인권보호관(안 제28조) ····· 51

13) 조직 및 운영(안 제35조) ····· 52

라. 직무 ····· 53

1) 수사관의 직무(안 제13조) ····· 53

2) 수사관의 직무관할(안 제16조) ····· 54

3) 수사관에 관한 지휘·감독(안 제18조) ····· 54

4) 수사관의 이의제기권(안 제19조) ····· 55

5) 정치 관여 금지 등 및 벌칙(안 제23조, 제37조) ····· 56

6) 이의신청, 불송치심의위원회(안 제26조, 제27조) ····· 60

7) 수사의 경합(안 제31조) ····· 64

8)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안 제32조) ····· 66

9) 인지 사건의 이첩(안 제33조) ····· 68

10) 수사관의 범죄에 대한 수사(안 제34조) ····· 68

11) 「형사소송법」의 준용(안 제36조) ····· 69

12) 직권남용죄(안 제38조) ····· 70

마. 인사 ····· 72

1) 수사관의 자격(안 제14조) ····· 72

2) 수사관의 임용(안 제15조) ····· 73

3) 결격사유(안 제17조) ····· 75

4) 당연퇴직(안 제21조) ····· 77

5) 정년(안 제22조) ····· 78

6) 「경찰공무원법」의 준용(안 제24조) ····· 79

7) 수사관의 파견 금지(안 제29조) ····· 82

8) 공직임용 제한 등(안 제30조) ····· 82

바. 부칙 ····· 85

1) 시행일(부칙 제1조) ····· 85

2)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부칙 제2조) ····· 85

3) 인사청문 등에 관한 특례(부칙 제3조) ····· 86

4) 공무원의 임용 특례(부칙 제4조) ····· 87

5)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6조) ····· 92

6) 다른 법률의 개정(부칙 제7조) ····· 93

7) 다른 법령과의 관계(부칙 제8조) ····· 94

3. 민형배의원안과 이용우의원안의 주요내용 비교·검토 ····· 97

가. 제정안들의 목적, 배경 ····· 97

나. 제정안들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97

다. 민형배의원안과 이용우의원안의 주요 내용 비교·검토 ····· 100

Ⅰ. 개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1. 제안 경위

1. 제　안　자 : 민형배의원 등 13인
2. 제안연월일 : 2025.　6.　11.
3. 회부연월일 : 2025.　6.　1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뿐만 아니라 영장청구권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검찰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또 검찰은 외부의 견제를 받지 않음. 이로 인해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조작수사, 표적수사, 선택적수사, 별건수사 등 처벌이 필요한 권력자들을 외면하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 버리곤 했음.

한편, 검찰 출신의 전관예우라고 불리는 전관부패도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음. 전관부패로 천문학적인 고액 수임료를 받는 등 검찰 카르텔이 형성되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낮다 보니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음.

이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 권한은 공소청이 가지고,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해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도록 함. 이는 기소와 수사가 전문적이고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여,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이 법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중대범죄는 「형법」 제2편제1장·제2장의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마약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규정함(안 제2조).

3)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며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토록 하기 위하여 지역중대범죄수사청을 둠(안 제4조).

4) 중수청에 중수청장을 두고,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고, 15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판사·검사·변호

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경찰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명함(안 제5조 및 제6조).

5)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둠(안 제7조).

6) 지역중수청에 지역중수청장을 두고, 지역중수청장은 그 지역중수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기관장을 지휘·감독함(안 제10조).

7) 지역중수청의 직제, 분장사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1조).

8) 중수청(지역중수청 포함)에 수사관을 두며, 수사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함(안 제12조).

9)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함(안 제14조).

10) 중수청장의 보수와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함(안 제5조).

11) 수사관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중수청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인사위원회를 둠(안 제20조).

12) 수사관의 정원은 중수청 및 각 지역중수청의 구성과 운영의 필요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1조).

13) 수사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중수청 이외의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다른 직위를 겸임할 수 없음(안 제28조).

14) 중대범죄등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하고, 수사관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함(안 제34조 및 제3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728호),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0730호)과 장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7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3. 회부 경과

민형배의원안은 2025년 6월 11일 발의되어, 같은 해 6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같은 해 7월 3일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25년 7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진행함.

2025년 10월 1일 개정된 「정부조직법」 제37조제9항[1]은 중대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도록 규정함.

민형배의원안은 2026년 3월 4일 행정안전위원로 회송됨.

대표발의	제출일자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송 일자
		전체회의 상정 (소위원회 회부)	소위원회 상정	
민형배의원	2025. 6. 11.	2025. 7. 3. (2025. 7. 9.)	2025. 7. 25.	2026. 3. 4.

1)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2026. 10. 2. 시행 예정) 제37조(행정안전부) ⑨ 중대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1. 제안 경위

1. 제 안 자 : 이용우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6. 3. 4.

3. 회부연월일 : 2026. 3. 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본 제정안은 국가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검찰이 담당하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부패·경제·마약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을 전담하는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여 수사 역량을 집중하려는 것임.

수사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와 그 관련 범죄로 한정하고, 수사관은 변호사나 수사 실무 전문가 중에서 임용하여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함.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내부 견제 장치로서 수사관의 부당한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보장하고, 사건 관계인의 민원을 처리하는 수사인권보호관을 개방형 직위로 두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또한, 불송치 결정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외부 위원이 과반인

불송치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퇴직 후 일정 기간 검사나 정무직 임용을 제한하여 수사의 순수성을 보호하여,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수사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통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정한 수사 기관을 확립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중수청 설치 및 지역조직 근거 마련

중대범죄등 수사를 담당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하고, 필요 시 지역중수청을 둘 수 있으며, 위치・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3항).

2) 중대범죄・관련범죄 범위를 법률로 정의

중대범죄를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내란・외환 및 수사・공소 업무 종사 공무원 범죄(대통령령 위임)로 규정하고, 공범관계 범죄・동일목적 동시/수단결과 범죄・증거인멸・위증 등 특정 범죄를 '관련범죄'로 정의하여 '중대범죄등' 범위를 확정함(안 제2조제1호~제3호).

3) 권한남용 금지 및 공정·중립 의무 명문화

중수청 공무원이 직무 수행 시 국민의 자유·권리를 존중하고 공정·중립을 지키며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4) 중수청장 설치, 권한 및 국회 통제 장치

중수청장을 두어 중수청 사무를 총괄하고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게 하며, 국회 요구 시 출석·보고·답변 의무를 부과하고 국회증언감정법 규정을 준용함(안 제5조제1항~제4항).

5) 중수청장 임명 절차·임기·정년 및 탄핵 규정

추천위원회가 2인을 추천하고 행안부장관 제청 후 대통령이 1인을 지명,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며, 임기 2년(중임 불가)·정년 65세, 위헌·위법 시 탄핵소추 가능, 보수·대우는 차관급으로 정함(안 제5조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6) 중수청장의 임명자격 및 궐위 시 후임 임명

수사 고위공무원·고위경찰(총경 이상) 경력, 법조경력(판사·검사·변호사), 수사사무 종사 경력, 관련 학문 조교수 이상 경력 중 15년 이상 경력자를 임명 대상으로 하고(경력 합산),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 임명을 규정함(안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7)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및 국회 추천절차

행안부에 추천위원회를 두고 7인 구성(행안부 차관, 경찰청장, 해경청장, 여당 교섭단체 추천 2인, 그 외 교섭·비교섭단체 추천 2인)으로 하며, 국회의장이 10일 내 추천 요청 및 미추천 시 갈음 위촉, 의결정족수(재적 3분의 2 찬성), 2인 후보 추천 및 추천 존중 등을 규정함(안 제7조제1항부터 제12항까지).

8) 차장 및 직제(조직체계) 규정

차장을 두어 중수청장을 보좌·대리하게 하고, 차장은 10년 이상 경력자 중 중수청장 제청→행안부장관 경유→대통령 임명으로 하며, 중수청 직제는 국·부 또는 과로 하고 세부 명칭·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및 제2항).

9) 지역중수청 운영 근거 마련

지역중수청장 설치 및 지휘·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지역중수청 직제·분장사무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

10) 수사관 제도 도입(자격·임용·관할·지휘 및 이의제기)

중수청에 수사관을 두어 중대범죄등을 수사하게 하고 협력 의무

를 부과하며(안 제12조, 안 제13조), 자격요건(변호사, 7급 이상 조사・수사 경력 등)과 계급체계(수사1~9급 등), 임용권한(대통령/중수청장), 직무관할 및 관할외 활동 허가를 규정하고(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상급자 지휘・감독 및 수사인권보호관에 대한 이의제기권과 불이익 금지를 둠(안 제18조,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11) 수사관 인사・복무: 결격・정원・당연퇴직・정년・정치관여 금지 및 경찰공무원법 준용

결격사유(경찰공무원법 결격, 탄핵 파면 후 5년,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2년 등), 특정직공무원 의제 및 정원(대통령령), 당연퇴직 사유, 정년 60세(중수청장 제외), 정당가입・정치활동 금지 및 영리업무・무단 유상직무 금지를 규정하고, 임용・승진・복무 등은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7조,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 제23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및 제24조).

12) 불송치 통제・인권보호 및 대외관계・벌칙 규정

불송치 결정에 대해 불송치심의위원회 또는 지역공소청에 이의신청을 허용하고(30일), 심의위가 3개월 내 경정하도록 하며, 기각 시 지역공소청 재이의 및 사건 송치・통지 절차를 규정함(안 제26

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7조제2항 및 제3항). 또한 수사인권보호관(개방형 직위 운영 가능)의 독립성, 수사방식 변경·수사관 교체 권고, 수사관 이의신청 조사·의견제출 및 미수용 시 서면사유 제시를 규정함(안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아울러 파견·겸임 금지, 퇴직 후 공직임용 제한 및 사건 수임 제한, 수사경합 시 이첩요청, 다른 수사기관·공소청과 협력 및 사건 이첩, 불송치 시 인지사건 이첩, 수사관 범죄 통보를 규정하고(안 제29조, 제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 제34조), 정치관여죄·직권남용죄 벌칙과 미수 처벌을 둠(안 제37조제1항·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2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Ⅱ. 검토의견

1. 이용우의원안에 대한 총괄 검토

가. 배경

국가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검찰이 담당하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부패·경제·마약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을 전담하는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여 수사 역량을 집중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2]이 시행되는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운영될 예정임.

기관의 업무와 관련해서 현행 「검찰청법」 제4조에 따라 검찰청이 담당하는 업무[3] 중 공소 제기 등의 업무는 공소청에서 담당하고, 중대

---

2)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시행일 2026년 10월 2일)
제35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사무・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둔다.
③ 공소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7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③・④ (생 략)
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⑥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⑦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둔다.
⑧ 소방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⑨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
⑩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3)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

범죄 수사에 대한 업무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담당할 예정임.

참고로, 현재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에는 검찰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청 등이 있음. 각 기관의 정원을 살펴보면, 검찰청 소속 검사의 정원은 2,292명이고,[4] 수사관[5]은 6,160명, 수사관 외 일반직 공무원은 2,237명,[6] 경찰공무원은 17명임.[7] 그리고,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정원 136,405명 중 경찰공무원은 131,284명, 일반직 공무원은 5,023명, 교육공무원은 22명, 소방공무원은 76명임.[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정원은 25명, 수사관 정원은 40명, 직원 정원은 20명임.[9]

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2.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검사정원법」 제1조(검사의 정원)**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

5)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별표 1] [별표 2]의 공무원 정원표 중 고위공무원단, 검찰부이사관,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마약수사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의 정원 수를 합하여 산출함.

6) 일반직 공무원에는 과학기술서기관, 전산사무관, 시설사무관, 시설주사보, 공업주사보, 임업주사보, 운전주사보, 통계주사보 등이 있음.

7)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별표 1]** 검사 외의 대검찰청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검사 외의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 포함)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

8)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4]** 경찰청 공무원 정원표, **[별표 5]** 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

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별표 1]** 검사 정원표, 직제 **[별표 2]** 수사관 정원표, **[별표 3]** 직원 정원표

나. 이용우의원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

이용우의원안은 본칙 8개 장 38개 조항 및 부칙 7개 조항으로 구성됨.

이용우의원안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부패·경제·마약범죄 등을 전담하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수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조직, 직무,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용우의원안은 중대범죄등의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지역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4조), 중대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마약범죄, 방위사업범죄, 내란·외환, 수사 및 공소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한 범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죄로 정하며(안 제2조),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키도록 하고 있음(안 제3조).

조직과 관련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중대범죄수사청장(안 제5조), 차장(안 제8조), 수사관(안 제12조)을 둠.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명 자격에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포함하고(안 제6조), 임기는 2년으로 하며(안 제5조제6항),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7항).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제는 국·부 또는 과로 하고, 직제의 명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지역중대범죄수청에는 지역중대범죄수사청장을 두고(안 제10조제1항), 지역중대범죄수사청의 직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그리고, 수사과정의 인권침해와 수사 공정성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인권보호관을 둠(안 제28조).

직무와 관련해서는 수사관의 계급은 중대범죄수사청장, 차장 및 수사1급부터 수사9급으로 구분하고(안 제15조제1항), 수사관은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도록 함(안 제18조).

수사관은 검사로부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하고(안 제32조 제3항), 수사관의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한여는 이 법에 반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을 준용함.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가 각각 다른 수사기관에 계속 중인 때에는 해당 범죄사실에 관하여 영장을 먼저 신청한 수사기관의 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안 제31조제1항), 중대범죄수사청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으며

(안 제32조제2항), 불송치 결정을 하는 때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함(안 제33조).

중대범죄수사청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는 관할 중대범죄수사청 불송치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지역공소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6조).

수사관은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가 금지되고(안 제23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함(안 제37조제1항).

인사와 관련해서는 수사관의 자격(안 제14조), 수사관의 임용(안 제15조), 결격사유(안 제17조), 당연퇴직(안 제21조), 정년(안 제22조), 「경찰공무원법」의 준용(안 제24조), 수사관의 파견 금지 등(안 제29조), 공직임용의 제한(안 제30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용우의원안의 주요 내용 >

구 분	내 용
목적	○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1)
정의	○ 중대범죄: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내란·외환·수사 및 공소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 제외)이 범한 범죄(§2) ○ 관련범죄: ① 중대범죄와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관계에 있는 범죄, ② 중대범죄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동시,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해진 범죄, ③ 중대범죄와 관련된 범인은닉·위증·허위감정 등 범죄
권한 남용의 금지	○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 준수하며, 부여된 권한 남용이 금지됨(§3)

구 분	내 용
조직	○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등(§3) ○ 중대범죄수사청장(§5), 임명자격(§6), 후보추천위원회(§7) ○ 차장(§8), 직제(§9), 수사관(§12), 중대범죄수사청 직원(§25) ○ 지방중대범죄수사청(§10), 직제(§11), 정원(§20) ○ 관할 중대범죄수사청에 불송치심의위원회(§27), 수사인권보호관(§28) 설치 ○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직무	○ 직무, 계급 - (직무, 관할) 수사관은 중대범죄등을 수사함(§14). 수사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의 관할 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함(§16) - (계급) 수사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 차장, 수사1급~9급으로 구분(§15) - 수사관은 직무에 관하여 소속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르고(§18), 지휘·감독에 이견이 있는 경우 수사인권보호관에게 이의제기 가능(§19) - 수사관의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항여는 이 법에 반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을 준용(§36) -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는 금지됨(§23),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함(§37) -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함(§38) ○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 (수사의 경합)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가 다른 수사기관에 계속 중인 때에는 해당 범죄사실에 관하여 영장을 먼저 신청한 수사기관의 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할 수 있음(§31①) - (이첩) 중대범죄수사청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 가능(§32②) - (불송치결정 시 이첩) 중대범죄수사청장은 불송치 결정을 하는 때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함(§33) ○ 이의신청 - 불송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는 관할 중대범죄수사청 불송치심의위원회 또는 지역공소청에 이의 신청 가능
인사	○ 수사관의 자격(§14):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등 ○ 임용: 수사관의 임용(§15), 결격사유(§17), 수사관의 파견 금지(§29), 공직임용 제한 등(§30) ○ 신분보장: 당연퇴직(§21), 정년(§22) ○ 수사관의 임용, 승진,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경찰공무원법」 준용(§24)

다. 이용우의원안에 대한 검토

이용우의원안은 중대범죄의 개념을 정의하고, 해당 범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지방중대범죄수사청 및 지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범죄를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효과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을 설립하려는 취지임.

이용우의원안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기관의 운영단계에서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수사관의 자격을 단일하게 수사1급~수사9급으로 정하고 있으며, 직무 측면에서 수사관이 중립성을 갖추도록 하고, 정치 관여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하나의 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짐으로써 발생했던 문제를 해소하고,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이 축적해 온 수사 역량을 유지하며, 다른 수사기관들과 함께 수사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이용우의원안은 행정안전부와 중대범죄수사청의 관계와 관련하여 정부조직법에서와 같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한 외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수사6급 이하의 수사관을 임용하도록 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에게 인사권을 부여하고 있음.

다음으로,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청의 수사가 경합하는 경우 현행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와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범죄사실에 대해 영장을 먼저 신청한 수사기관에 수사의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수사

범위의 중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그리고, 수사관과 검사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검사로부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라. 해외 사례 : 영국 등[10]

독일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수사권체계는 검사 등이 수사의 주재자[11]로서 우리나라의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전의 수사체계와 유사한 구조임.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하여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을 설치하는 개편안은 영국의 수사·공소기관의 구조와 닮아 있음. 영국은 수사와 공소가 비교적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국가로 분류되는데, 영국의 수사·공소기관에는 왕실기소청(Crown Prosecution Service), 경찰(Police), 중대사기수사청(Serious Fraud Office, 중대사기수사청은 수사와 기소 모두 담당), 국가범죄수사청(National Crime Agency, 국가범죄수사청은 수사를 담당)이 있음.

경찰은 경미범죄나 일반범죄를 담당하고, 국가범죄수사청(NCA)은 마약, 자금세탁 등 중대범죄를 담당[12]하며, 중대사기수사청(SFO)은 중대하고 복잡한 경제범죄나 뇌물범죄를 담당함. 중대사기수사청장은 매년 10건 정도만 중대사기수사청의 사건으로서 새로이 선정함으로써 연

---

10) 김광현, “영국 수사체계의 연혁과 그 시사점 - 수사·공소기관의 분리 및 보완수사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410호 1면~3면, 2025년 9월 19일

11) 독일의 검찰·경찰 관계는 기본적으로 검사가 수사주재자 내지 수사지휘권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중죄사건에 대해서는 예심판사가 수사권을 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죄사건에 대한 기소권의 행사를 위해 범행혐의의 유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수사권을 가진다. 그리고 중죄 이외의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원칙적으로 수사권을 가진다. 이 범위 내에서 프랑스의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며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를 지휘·감독하고 있다.
출처: 허일태, “독일·프랑스의 수사구조를 통해서 본 경찰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과 수사권내용”, 「형법연구」(Ⅲ) 474면, 2007년, 진원사

12) 영국의 국가범죄수사청이 담당하는 수사에는 아동성착취, 국경사건, 사기, 현대판 노예 및 인신매매, 불법총기, 마약밀매, 밀입국 조직범죄, 뇌물·부패, 사이버범죄, 돈세탁·불법금융, 납취·학대를 정하고 있음(출처: https://www.nationalcrimeagency.gov.uk/what-we-do).

간 60건 내외의 사건만을 유지하여 처리하고 있음.[13]

각 기관의 수사권한은 일정 부분 중복되는데, 국가범죄수사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경찰과 중대사기수사청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중대사기수사공소청이 사건의 인계를 요청하면 경찰이나 국가범죄수사청이 이에 응하여야 함.

영국 경찰은 주민직선 지방치안위원장, 지방치안패널, 내무부장관, 지방경찰청장의 사각체제로 운영됨. 왕립기소청과 중대사기수사청은 법무부장관 소관이며, 국가범죄수사청은 내무부장관 소관으로, 각각 장관급 소관 부처가 의회에 책임을 지고, 기본 정책의 결정 등 일정한 권한을 갖지만, 각 청은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상의 독립성을 가짐.

참고로, 미국은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범죄를 중죄(felony), 경죄(misdemeanor) 등으로 구분함.[14] 일반적으로 법정형이 사형 또는 1년 초과의 자유형이 규정된 경우 중죄, 나머지를 경죄라고 함. 그러나 입법부가 범죄의 등급을 정하고,[15] 주(州)별로 그 규정이 다르므로 해당 주의 형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함. 체포의 요건에 있어서 중죄와 경죄는 차이가 있고, 대배심을 운영하는 주에서는 중죄는 대배심의 기소장(grand jury indictment)에 의해 공소제기됨.[16]

---

13) 강석구, “영국 국립범죄수사청, 중대비리수사기소청 방문 및 전문가 자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출장보고서 3면, 2017
14) 최철환, “영국의 경죄사건 처리절차와 형사사법체계”, 법조 55권 1호 270면, 2006
15) 미연방법전 제18집 제3559조(a)는 중죄(felony)를 A등급에서 E등급까지, 경죄(misdemeanor)를 A등급에서 C등급까지 구분하고, 범칙사건(infraction)을 규정하고 있음.
출처: 오기두, “미국의 형벌제도”, 저스티스 통권 제82호 128면~129면, 2004년
16) 이성기, 박용철, “Global Standard 마련을 위한 쟁점별 주요국 형사법령 비교연구(Ⅰ) 231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9-B-09, 2019년

영국 형사법에서 범죄의 단계적 분류는 약식재판 범죄(summary offences), 정식기소 범죄(indictable offences), 어느 쪽으로도 재판할 수 있는 범죄(offences triable either way)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됨. 약식재판 범죄는 약식재판 범죄를 규정한 개별법에서 약식재판 절차에 의해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을 규정했기 때문에 약식재판 범죄가 됨. 정식기소 범죄는 정식 기소절차를 통해서만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모의살인, 고의살인, 공모사기, 부패한 공중도덕에 관한 죄 등 모든 보통법 범죄는 정식기소 범죄임. 둘 중 어느 하나로 기소될 수 있는 범죄에는 위험운전죄 등이 있음.[17]

17) 최철환, “영국의 경죄사건 처리절차와 형사사법체계”, 법조 55권 1호 270면~273면, 2006

2. 이용우의원안에 대한 조문별 검토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대범죄”란 부패범죄, 경제범죄, 마약범죄, 방위사업범죄, 내란범죄, 외환범죄, 수사 및 공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중수청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범한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말한다. 2.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중대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고 제1호의 범죄와 관련하여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다른 죄 나. 제1호의 범죄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범죄 다. 중대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3. “중대범죄등”이란 제1호와 제2호의 죄를 말한다.

이용우의원안 제1조는 동 법안의 규율 범위가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용우의원안과 유사하게 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정하고 있는 입법례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18]가 있음.

1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

이용우의원안 제2조제1호는 중대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마약범죄, 방위사업범죄, 내란범죄, 외환범죄, 중대범죄수사청 외의 수사 및 공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한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정하고 있음.

이용우의원안 제2조제2호는 관련범죄로 ①중대범죄와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관계에 있는 범죄, ② 중대범죄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동시,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해진 범죄, ③ 중대범죄와 관련된 범인은닉·위증·허위감정 등 범죄임.

이용우의원안 제2조에 따른 중대범죄등의 내용은 현행 「검찰청법」 제4조 및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와 유사한 내용임.

< 이용우의원안의 중대범죄와「검찰청법」제4조의 중요범죄 비교 >

이용우의원안 제2조	「검찰청법」제4조,「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제2조
(제1호) 중대범죄 부패범죄, 경제범죄, 마약범죄, 방위사업범죄, 내란범죄, 외환범죄	(법 제4조①제1호가목) 중요범죄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제1호) 중대범죄 수사 및 공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중수청 소속 공무원은 제외)	(법 제4조①제1호나목) 중요범죄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

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우의원안 제2조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제2호가목) 관련범죄 중대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고 제1호의 범죄와 관련하여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다른 죄 (제2호나목) 관련범죄 제1호의 범죄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범죄	(법 제4조①제1호다목) 중요범죄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제2호다목) 관련범죄 중대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규정 제2조제3호가목) 무고·도주·범인은닉·증거인멸·위증·허위감정통역·보복범죄 및 배심원의 직무에 관한 죄 등 국가의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별표 3에 규정된 죄

이용우의원안 제2조는 중대범죄의 범위를 「검찰청법」 제4조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와 유사하게 함으로써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기존 수사역량을 유지하면서 수사기관간의 역할 분담 및 협력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참고로, 검찰청과 경찰청의 수사권 조정 이후 2021년 1월 1일 시행된 (구)「검찰청법」(법률 제16908호) 제4조제1호가목에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함.[19]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국, 형사국, 안보수사국의 사무로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이들 사무 중 부패·경제·마약 등 주요 범죄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서울경찰청 및 경기남부경찰청의 광역수사단 등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의 반부패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 등이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서울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사건을 분장하도록 하고 있어, 법령의 개념상 이용우의원안에 따른 중대범죄와 중첩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 보이고, 실제 수사과정에서도 수사영역이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보이므로 이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20]

---

19) 참고로, 「검찰청법」 제4조제1항가목은 2022년 5월 9일 개정되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개정되었는데, 이후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부패범죄의 범주에 공직자범죄(부패방지 및 공직윤리 관련 부패범죄), 선거범죄(정치자금 및 공직선거 관련 부패범죄)를 추가하고, 경제범죄의 범주에 방위사업범죄(기술 및 자원 보호 관련 경제범죄의 하나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1조 및 제22조에 해당하는 죄를 추가함.

20)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의2(광역수사단) ① 광역수사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단장은 **부패**·공공·**경제**·**마약**·국제·강력·조직 범죄 등 주요 범죄 사건에 관한 정보수집 및 수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56조의2(광역수사단) ① 광역수사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단장은 **부패**·공공·**경제**·**마약**·국제·강력·조직 범죄 등 주요 범죄 사건에 관한 정보수집 및 수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장 시·도경찰관서 제2절 서울특별시경찰청

제40조의2(광역수사단) ① 광역수사단에 반부패수사대·공공범죄수사대·금융범죄수사대·마약범죄수사대·국제범죄수사대 및 형사기동대를 둔다.

② 각 대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반부패수사대장**은 공무원범죄 등 주요 부패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를 분장한다.

1.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서울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2. 국가수사본부 또는 서울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3. 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

④ (생 략)

⑤ **금융범죄수사대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불법사금융 등 주요 경제·금융범죄 사건으로서

그리고 현재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분리하는 과정이고,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는 수사 사무에는 소년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교통 관련 범죄 등[21]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경찰사무가 이용우의원안의 중대범죄와 중첩되는 부분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

현행 법률 중 중대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서는 중대범죄를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22] 범죄의 중대성은 양형 과정에서 범죄 유형과 형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를 분장한다.
1.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서울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2. 국가수사본부 또는 서울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3. 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
⑥ **마약범죄수사대장**은 마약류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를 분장한다.
1.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서울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2. 국가수사본부 또는 서울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3. 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
⑦·⑧ (생 략)

2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 다. (생 략)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2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함께 고려하여 결정됨.[23]

영미법의 경우에는 중죄와 경죄를 구분하고 있음.

해외 입법례로 영국의 「범죄와 법원법 2013」제1조제4항은 국가범죄수사청(National Crime Agency)이 조직범죄 및 중대범죄에 맞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이 수행되도록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24]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
나. 별표에 규정된 죄
다.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
라.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 및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
마.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行爲地)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

23)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제3항은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 첫 번째 고려사항으로 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제1호), 두 번째 고려사항으로 범죄의 중대성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정(제2호)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을 기준으로 범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양형기준의 설정 등) ① · ② (생 략)
③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
2. **범죄의 중대성**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정
3. ~ 8. (생 략)

24) 「Crime and Courts Act 2013」
1 The NCA and its officers
(1) ~ (3) (생 략)
(4) The NCA is to have the function (the "crime-reduction function") of securing that efficient and effective activities to combat organised crime and serious crime are carried out (whether by the NCA, other law enforcement agencies, or other persons).

나. 권한남용 금지(안 제3조)

제 정 안
제3조(권한남용의 금지)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용우의원안 제3조는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과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키도록 하고 있음. 또한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이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이용우의원안 제3조는 중대범죄등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중립성과 독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한민국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을 다시 한번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이용우의원안 제3조와 유사한 입법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가 있음. 그리고 현행 「검찰청법」 제4조제3항에서도 검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음.[25]

2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③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조직

1) 중대범죄수사청 등의 설치(안 제4조)

제 정 안
제4조(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등) ① 중대범죄등의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둔다. ② 중수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중대범죄수사청(이하 “지역중수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중수청과 지역중수청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용우의원안 제4조제1항은 중대범죄등의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도록 하고 있고, 안 제4조제2항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기 위해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안 제4조제3항은 중대범죄수사청 및 지역중대범죄수사청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용우의원안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과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대범죄수사청이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생하는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이용우의원안 제3조제2항과 유사한 입법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있음. 동 조항은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경찰청을 두고,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26]

2) 중대범죄수사청장(안 제5조)

제 정 안
제5조(중대범죄수사청장) ① 중수청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하 “중수청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중수청장은 중수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중수청 사무를 총괄하며 중수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중수청장은 제7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④ 중수청장은 국회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출석하여 중수청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할 의무가 있으며, 국회에서의 답변과 서류제출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용한다. ⑤ 중수청장의 보수 및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한다. ⑥ 중수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5세로 한다. ⑦ 중수청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⑧ 중수청장은 중수청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2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경찰청을 두고,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둘 수 있다.

이용우의원안 제5조제1항은 중대범죄수사청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두도록 하고 제2항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총괄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함.

이용우의원안 제5조제1항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유사 입법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27]은 경찰청장이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용우의원안 제5조제3항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 이상을 추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함.

이용우의원안 제5조제3항은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동 임명절차가 신중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에 국민의 뜻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임.

유사한 입법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28]이 있음. 동 조항에서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

2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찰청장)** ③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2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찰청장)** ② 경찰청장은 국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이용우의원안 제5조제4항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국회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출석하여 중수청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

이는 중대범죄등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로부터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임.

유사 입법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국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용우의원안 제5조제5항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보수 및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하도록 함. 이 같은 보수 및 대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청장의 보수와 대우와 동일한 수준임.

이용우의원안 제5조제6항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29]에서 정하고 있는 경찰청장의 임기와

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2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찰청장)** ④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重任)할 수 없다.

동일하고, 「검찰청법」 제12조제3항[30]에 따른 검찰총장의 임기와 동일함.

이용우의원안 제5조제6항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정년을 65세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총장과 같은 수준이고, 경찰청장의 정년 60세보다 길게 설정되어 있음.

이용우의원안안 제5조제7항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를 통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중대범죄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적법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입법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31]은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검찰총장도 탄핵 소추될 수 있음.[32]

이용우의원안 제5조제8항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중수청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

30)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 ③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3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찰청장)** ⑤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32) **「검찰청법」 제37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이용우의원안 제6조제7항의 입법 배경을 살펴보면, 경찰청 등 「정부조직법」에 따른 청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33]에 따른 중앙관서에 해당하여 각 기관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검찰청의 경우 법무부 예산 프로그램(관) 중 "검찰활동"[34]으로 편성되어 있고 해당 예산은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검찰청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35]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범죄수사청의 예산도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기 위해 동 규정들이 마련된 것으로 보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에 해당하므로, 중대범죄수사청은 별도 기관으로서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는 의견임.

---

33) **「국가재정법」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①이 법에서 "독립기관"이라 함은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③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34) 검찰활동 프로그램의 세부사업에는 형사법정비(1338-300), 형사보상(1337-302),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1337-301), 공판활동지원(1337-300), 마약수사(1335-304),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1335-303), 공공수사(1335-302), 형사부 등 수사지원(1335-301),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1333-306),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정보화)(1334-501),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1334-500), 국제형사협력지원(ODA)(1333-303), 과학수사인프라구축(1333-302),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1333-301), 검찰청시설운영(1333-300)이 있음.

35) 동아일보 2019년 10월 23일 기사, "'검찰예산 법무부서 분리편성해 국회가 심의' 논란"

3)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명자격(안 제6조)

제 정 안
제6조(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명자격) ① 중수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경찰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③ 중수청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임명된 중수청장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이용우의원안 제6조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명자격으로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학·경찰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및 대학 등에서 법률학·경찰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등을 정하고 있음.

이용우의원안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명자격으로 국가기관 등에서 수사 등의 사무에 종사한 사람 등을 다양한 자격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중대범죄 수사 등에 전문성을 가지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독립적, 중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사를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임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입법례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찰청장의 임명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지만,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격을 요구하고 있음.

동 법률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장의 임용 자격에는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임.[36]

---

3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⑥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 기간의 합산이 15년 이상인 사람

4)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안 제7조)

제 정 안
제7조(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 ① 중수청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수청장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행정안전부 차관 2. 경찰청장 3. 해양경찰청장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제4호의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⑤ 국회의장은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하여 위원을 위촉한다. ⑦ 추천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⑨ 추천위원회는 중수청장 후보자로 2명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 정 안
⑩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수청장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⑪ 추천위원회가 제9항에 따라 중수청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⑫ 추천위원회의 구성 중 국회추천 위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용우의원안 제8조제1항은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이용우의원안 제8조제4항은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행정안전부차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제4호의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이용우의원안 제8조제4항은 중대범죄수사청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수사 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하고,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인사를 통해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이용우의원안 제8조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자 2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역량이 뛰어난 후보자를 발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용우의원안 제8조제4항과 유사한 방식으로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입법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제4항이 있음.[37]

5) 차장(안 제8조)

제 정 안
제8조(차장) ① 중수청에 차장을 둔다. ② 차장은 중수청장을 보좌하며, 중수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차장은 10년 이상 제6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중수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차장의 궐위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용우의원안 제8조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차장을 두는 근거를 마련

3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①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
2. 법원행정처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제4호의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⑤ 국회의장은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한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2.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⑦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⑨ 추천위원회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처장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⑩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하려는 것임. 차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보좌하며,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함.

이용우의원안 제9조를 통해 차장이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대범죄수사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이용우의원안 제8조제3항은 차장은 10년 이상 제6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이용우의원안 제8조제3항은 차장의 임명자격을 규정하고, 여러 단계의 임명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차장에 적합한 인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차장을 두고 있는 유사입법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경찰청 차장)[38], 「검찰청법」 제13조(차장검사)[3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차장)[40]이 있음.

---

3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경찰청 차장)** ① 경찰청에 차장을 두며, 차장은 치안정감(治安正監)으로 보한다.
② 차장은 경찰청장을 보좌하며,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9) **「검찰청법」 제13조(차장검사)** ① 대검찰청에 차장검사를 둔다.
②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4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차장)** ① 차장은 10년 이상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제5조제2항은 차장의 임명에 준용한다.

6) 직제(안 제9조)

제 정 안
제9조(직제) ① 중수청의 직제는 국·부 또는 과로 한다. ② 중수청 직제의 명칭 및 분장 사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용우의원안 제9조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제는 국, 부, 과로 하도록 하고, 직제의 명칭 및 분장 사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이용우의원안 제9조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에 관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안이 시행된 이후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유사입법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직제)[41]와 「검찰청법」 제16조(직제) 등이 있음.[42]

---

③ 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4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등**

제31조(직제)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하부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2) **「검찰청법」**

제2장 대검찰청

제16조(직제) ① 대검찰청에 부(部)와 사무국을 두고, 부와 사무국에 과를 두며, 부·사무국 및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分掌事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부, 사무국 및 과에는 각각 부장, 사무국장 및 과장을 두며, 부장은 검사로,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과장은 검찰부이사관·정보통신부이사관·검찰수사서기관·정보통신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의 과장은 검사로 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부장, 사무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 부, 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대검찰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장검사 또는 부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를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담당관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로 보할 수 있다.

7) 지역중대범죄수사청장(안 제10조)

제 정 안
제3장 지역중대범죄수사청 제10조(지역중수청장) ① 지역중수청에 지역중대범죄수사청장(이하 “지역중수청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역중수청장은 그 지역중수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이용우의원안 제3장 지역중대범죄수사청의 제10조에서는 지역중대범죄수사청에 지역중대범죄수사청장 두고, 지역중대범죄수사청장이 그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함.

이용우의원안 제10조제2항은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지방중대범죄수사청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과 유사한 입법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등에 제28조(시·도경찰청장), 제29조(시·도경찰청 차장)와 현행 「검찰청법」은 제4장 지방검찰청 및 지청 제21조(지방검찰청 검사장), 제23조(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를 두고 있음.[43]

---

4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등 제28조(시·도경찰청장)** ① 시·도경찰청에 시·도경찰청장을 두며, 시·도경찰청장은 치안정감·치안감(治安監) 또는 경무관(警務官)으로 보한다.
②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③ 시·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8) 직제(안 제11조)

제 정 안
제11조(직제) 지역중수청의 직제, 분장사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용우의원안 제11조는 지역중수청의 직제, 분장사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이용우의원안 제11조는 지역중대버죄수사청의 직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안이 시행된 이후에는 지역중대범죄수사청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유사입법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직제)[44]와 「검찰청법」 제26조(직제)가 있음.[45]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④ 제3항 본문의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심의·의결을 통하여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심의·의결이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권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시·도경찰청 차장) ① 시·도경찰청에 차장을 둘 수 있다.

② 차장은 시·도경찰청장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시·도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검찰청법」 제4장 지방검찰청 및 지청

제21조(지방검찰청 검사장) ① 지방검찰청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둔다.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3조(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 ① 지방검찰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청에 차장검사를 둔다.

② 차장검사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보좌하며,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4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등**

제31조(직제)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하부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9) **수사관**(안 제12조)

제 정 안
제12조(수사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수청에 수사관을 둔다.

이용우의원안 제12조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사관을 두도록 하고 있음.

이용우의원안 제12조는 수사관이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중대범죄수사청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10) **정원**(안 제20조)

제 정 안
제20조(정원) ① 중수청장, 차장, 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수사관의 정원은 중수청 및 각 지역중수청의 구성과 운영의 필요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5) 「검찰청법」
제4장 지방검찰청 및 지청
제26조(직제) ① 지방검찰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청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부에 과를 둘 수 있으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무국 및 과에는 각각 사무국장과 과장을 두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검찰부이사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과장은 검찰부이사관·검찰수사서기관·정보통신서기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마약수사사무관·전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제4항의 사무국장과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 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이용우의원안 제20조제1항은 중대범죄수사청장, 차장, 수사관을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특정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 공무원의 하나로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검사, 경찰공무원 등이 포함됨.[46]

이용우의원안 제20조제1항은 중대범죄수사청장, 차장, 수사관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중대범죄수사청이 직무를 전문적·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외부 임용 가능성[47]을 열어둔 것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46)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47) 제정안 제6조(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명자격) ① 중수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경찰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이용우의원안 제20조제2항은 수사관의 정원은 중대범죄수사청 및 각 지역중대범죄수사청의 구성과 운영의 필요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이용우의원안 제20조제2항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 정원을 대통령령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 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다만, 직제와 정원은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제정안 제20조제2항의 위임규정은 직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조항과 병합하여 함께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11) 중대범죄수사청 직원(안 제25조)

제 정 안
제25조(중대범죄수사청 직원) ① 중수청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수청 직원의 직제와 정원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수청 직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용우의원안 제25조제1항은 중대범죄수사청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중대범죄수사청이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중대범죄등의 수사를 위한 수사관 외에도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력 및 국민의 민원 접수 등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다수의 공무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이외의 공무원의 정원은 8,414명 중 수사관[48]은 6,160명, 수사관 외 일반직 공무원은 2,237명,[49] 경찰공무원은 17명임.[50] 그리고,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정원 136,405명 중 경찰공무원은 131,284명, 일반직 공무원은 5,023명, 교육공무원은 22명, 소방공무원은 76명임.[5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정원은 25명, 수사관 정원은 40명,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은 20명임.[52]

유사한 형태의 규정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그 밖의 직원), 「검찰청법」 제45조(검찰청 직원)이 있음.[53]

이용우의원안 제25조제2항은 중대범죄수사청 직원의 직제와 정원에

---

48)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별표 1] [별표 2]의 공무원 정원표 중 고위공무원단, 검찰부이사관,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마약수사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의 정원 수를 합하여 산출함.

49) 일반직 공무원에는 과학기술서기관, 전산사무관, 시설사무관, 시설주사보, 공업주사보, 임업주사보, 운전주사보, 통계주사보 등이 있음.

50)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별표 1]** 검사 외의 대검찰청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검사 외의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 포함)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

5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4]** 경찰청 공무원 정원표, **[별표 5]** 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

5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별표 1]** 검사 정원표, 직제 **[별표 2]** 수사관 정원표, **[별표 3]** 직원 정원표

5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그 밖의 직원)** ① 수사처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검찰청법」 제45조(검찰청 직원) 검찰청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검찰부이사관,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 마약수사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마약수사서기보 및 별정직공무원을 둔다.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을 통해 직제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제25조제2항의 삭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용우의원안 제25조제3항은 중수청 직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정안 제35조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25조제3항의 삭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12) **수사인권보호관**(안 제28조)

제 정 안
제28조(수사인권보호관) ① 수사과정(입건 전 조사를 포함한다)의 인권침해와 수사 공정성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중수청에 수사인권보호관을 둔다. 다만, 중수청장은 수사인권보호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사인권보호관은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인권침해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즉시 관할 중수청의 장에게 인지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사인권보호관은 수사에 대하여 사건관계인(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피진정인 및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의 민원이 이유 있을 경우, 관할 중수청장에게 수사 방식의 변경 또는 수사관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수사인권보호관은 제19조에 따른 수사관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조사하고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할 중수청장은 수사인권보호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

제 정 안
야 한다. ⑥ 수사인권보호관의 자격,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용우의원안 제28조는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수사 공정성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관할 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인권보호관을 두고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수사인권보호관은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인권침해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즉시 관할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함.

이용우의원안 제28조는 수사인권보호관을 두고 인권침해와 수사공정성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감시하려는 취지로 보임. 수사인권보호관은 감찰관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직책의 명칭에 인권을 추가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에 관한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유사한 법령으로 현행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제69조는 수사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급 검찰청에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있음.[54]

54) 「인권보호수사규칙」 제69조(인권보호관의 지정 등) ① 수사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급 검찰청에 인권보호관을 둔다.
② 각급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검사로 한다.
1. 대검찰청: 인권정책관
2.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차장검사가 있는 지청: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3. 차장검사가 없는 지청: 지청장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인권보호관은 소속 검찰청의 장을 직접 보좌한다.
④ 대검찰청을 제외한 각급 검찰청의 장은 소속 검사를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경찰청의 경우에는 경찰 직무수행 과정상의 인권보호 및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관이 경찰청장을 보좌하도록 하고 있음.[55]

13) 조직 및 운영(안 제35조)

제 정 안
제35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중수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용우의원안 제35조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 과정에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참고로, 경찰의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인 위임 규정은 2014년 5월 20일 개정 전 (구)「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3조(시행령)[56]에서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해당 조항은 삭제되어 현재는 일반적 위임 근거조항은 없음.

다만, 조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제를 통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제정안 제35조에서 위임하는 사항에서는 조직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55)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감사관)**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찰청장을 보좌한다.
6. 경찰 직무수행 과정상의 인권보호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6)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법률 제11736호, 2014. 5. 20. 개정 전 법률) 제13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직무

1) 수사관의 직무(안 제16조)

제 정 안
제13조(수사관의 직무) ① 수사관은 중대범죄등을 수사한다. ② 수사관은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용우의원안 제13조는 수사관이 중대범죄등을 수사하도록 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용우의원안 제13조는 수사관의 직무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임.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직무를 정하고 있는 유사 입법례에서는[57]은 수사처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정하여, 「형사소송법」 규정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이용우의원안 제13조제1항에 수사와 관련된 「형사소송법」 규정을 인용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5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수사처수사관의 직무)** ① (생 략) ② 수사처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2) **수사관의 직무관할**(안 제16조)

제 정 안
제16조(수사관의 직무관할) 수사관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수청(소속 지역중수청을 포함한다)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중수청장(소속 지역중수청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얻어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용우의원안 제16조는 수사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의 관할 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의 허가를 얻어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이용우의원안 제16조는 수사관이 직무관할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권한을 남용할 소지를 줄이려는 취지임.

3) **수사관에 관한 지휘·감독**(안 제18조)

제 정 안
제18조(수사관에 관한 지휘・감독) 수사관은 직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이용우의원안 제18조는 수사관이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음.

이용우의원안안 제18조는 수사관에 대한 지휘·감독의 근거를 마련함으써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전체가 체계적으로 협력하고, 조직의 역량을

적절히 배분하여 중대범죄등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이용우의원안 제18조와 유사한 입법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58], 「검찰청법」 제7조제1항[59]이 있음.

4) **수사관의 이의제기권**(안 제19조)

제 정 안
제19조(수사관의 이의제기권) ① 수사관이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하여 상관의 지휘·감독에 관한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제28조에 따른 수사인권보호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수사관은 이의제기를 이유로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③ 그 밖에 수사관의 이의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용우의원안 제19조제1항은 수사관이 구체적인 사건 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감독에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사인권보호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용우의원안 제19조는 적법성, 정당성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중대범죄수사청 내부적으로 지휘·감독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뤄지도록 하려는 취지임.

5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직무수행)** ① 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59) **「검찰청법」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유사 입법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60], 「검찰청법」 제7조제2항[61]이 있음.

5) 정치 관여 금지 등 및 벌칙(안 제23조·제37조)

제 정 안
제23조(정치 관여 금지 등) ① 수사관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의 사건에 대하여 유리 또는 불리하게 처분하거나 처분을 약속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5.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소속기관에 사직원을 제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7. 중수청 공무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6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직무수행) ② 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61) 「검찰청법」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정 안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8.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일(소속기관에 사직원을 제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수사관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2.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행위 제37조(정치 관여죄) ① 제23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용우의원안 제23조는 수사관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이용우의원안 제23조제2항은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의 사건에 대하여 유리 또는 불리하게 처분하거나 처분을 약속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음.

이용우의원안 제23조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을 돕기 위한 취지임.

이용우의원안 제23조제2항 각 호는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용우의원안 제43조제2항제3호를 제외한

제1호, 제2호, 제4호～제7호는 유사 입법례인 「경찰공무원법」 제23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동일한 내용임.[62]

이용우의원안 제23조제2항제3호는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의 사건에 대하여 유리 또는 불리하게 처분하거나 처분을 약속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행위는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고, 정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용우의원안과 같이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용우의원안 제23조제2항제8호는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로 소속 기관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고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일을 정하고 있음.

이용우의원안 제23조제2항제8호는 수사관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경우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중대범죄 등 수사업무를 담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

62) **「경찰공무원법」 제23조(정치 관여 금지)** ① 경찰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6.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국회법」 제29조[63]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등 외의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위반 시 징계의 대상이 되며, 「지방자치법」 제43조는 지방의회의원이 국가공무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지방의회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벌칙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용우의원안 제37조제1항은 수사관이 소속기관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하고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되면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여 강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음.

이용우의원안 제52조는 제43조의 정치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용우의원안 제52조는 정치관여 금지 등의 의무 위반 시 이를 제재함으로써 정치관여 금지 등의 의무가 실효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

63) **「국회법」 제29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 목적의 명예직
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② ~ ⑧ (생 략)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2. 제29조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제90조(의원의 퇴직)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한다.
1.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할 때

이용우의원안 제52조는 처벌의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유사 입법례인 「경찰공무원법」 제37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보다 강화된 수준임.[64]

6) 이의신청 및 불송치심의위원회(안 제26조)

제 정 안
제26조(이의신청) ① 불송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는 관할 중수청 불송치심의위원회(이하 “불송치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또는 지역공소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불송치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불송치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이의신청을 받은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정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이의신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불송치심의위원회가 기각결정을 한 경우 지역공소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서 지역공소청에 이의가 신청되는 경우 수사관은 지체없이 지역공소청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

64) 「경찰공무원법」 제37조(벌칙) ① 경찰공무원으로서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거나 작전 수행 중인 경우에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 「국가공무원법」 제58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며, 제2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57조를 위반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집단 살상의 위급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제24조 또는 제25조,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및 제58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경찰공무원으로서 제23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그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④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44조 또는 제45조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법 제66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정 안
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불송치심의위원회) ① 제26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를 위하여 관할 중수청에 불송치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불송치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외부 위원을 과반으로 한다. ③ 불송치심의위원회는 3개월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불송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용우의원안 제26조제1항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는 관할 중대범죄수사청 불송치심의위원회 또는 지역공소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은 고발인을 제외한 고소인, 피해자가 불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65]

65)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이용우의원안은 중대범죄수사청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중대범죄수사청에 설치된 불송치심의위원회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대범죄수사청이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적정성 또는 적법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이용우의원안 제26조제1항은 불송치 결정의 주체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해당 불송치 결정이 중대범죄수사청의 불송치 결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용우의원안 제26조제3항은 불송치 결정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의신청기간을 장기로 두는 경우 법적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이용우의원안 제26조제4항은 중대범죄수사청 불송치심의위원회에서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역공소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중대범죄수사청과 독립된 지역공소청에서 불송치 결정의 적법성 또는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용우의원안 제26조제5항은 지역공소청에 이의가 신청되는 경우 수사관은 지체없이 지역공소청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2항과 유사한 형태의 제도임.

이용우의원안 제26조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중대범죄수사청 불송치심의위원회에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해당 사항을 이용우의원안과 같이 별도의 제정안에 규정할지 또는 「형사소송법」에 일괄적으로 규정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이용우의원안 제27조는 안 제26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를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에 불송치심의위원회를 두고, 불송치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을 과반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3개월 내에 심의를 마치도록 함.

이용우의원안 제27조는 불송치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외부위원을 과반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3개월 내 심의가 진행되어야 함을 명시하여,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참고로, 이용우의원안 제27조와 유사한 성격의 제도로서 경찰청은 경찰청 예규인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수사본부 및 시·도경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음.[66] 고소인,

---

66)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4장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제1절 국가수사본부에 설치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제10조(설치 및 심의대상) ① 국가수사본부에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제2절 시・도경찰청에 설치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제20조(설치・구성) ① 경찰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를 심의하여 수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

고발인, 피해자 등은 수사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관서에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수사심의 대상에 불송치 결정이 포함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음.[67]

7) 수사의 경합(안 제31조)

제 정 안
제31조(수사의 경합) ①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한 수사가 각각 다른 수사기관에 계속 중인 때에는 해당 범죄사실에 관하여 영장을 먼저 신청한 수사기관의 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첩요청을 받은 다른 수사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사건을 이첩하여야 한다.

이용우의원안 제31조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한 수사가 각각 다른 수사기관에 계속 중인 때에는 해당 범죄사실에 관하여 영장을 먼저 신청한 수사기관의 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첩요청을 받은 다른 수사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사건을 이첩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우의원안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마약범죄 등 중대범죄는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국, 형사국,

---

해 시·도경찰청에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67)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신청) ① 사건관계인(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피진정인 및 그들의 대리인을 말한다)은 경찰 입건 전 조사·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관서(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경찰서 또는 시·도경찰청을 말한다)에 심의를 신청(이하 "수사심의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경찰청 법령해석 정보[경찰청(경기남부 화성서부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2025. 7. 17.]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384636&ofiClsCd=350128

안보수사국의 사무[68]인 부패·경제·마약 등 주요 범죄 사건과 중첩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사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임.

이용우의원안 제31조는 현행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의 경합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69]와 동일한 방식으로 경찰청 등 다른 수사기관이 해당 범죄사건에 영장을 먼저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

68)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의2(광역수사단) ① 광역수사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단장은 **부패**·공공·**경제**·**마약**·국제·강력·조직 범죄 등 주요 범죄 사건에 관한 정보수집 및 수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56조의2(광역수사단) ① 광역수사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단장은 **부패**·공공·**경제**·**마약**·국제·강력·조직 범죄 등 주요 범죄 사건에 관한 정보수집 및 수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장 시·도경찰관서 제2절 서울특별시경찰청
제40조의2(광역수사단) ① 광역수사단에 반부패수사대·공공범죄수사대·금융범죄수사대·마약범죄수사대·국제범죄수사대 및 형사기동대를 둔다.
② 각 대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반부패수사대장**은 공무원범죄 등 주요 부패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를 분장한다.
1.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서울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2. 국가수사본부 또는 서울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3. 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
④ (생 략)
⑤ **금융범죄수사대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불법사금융 등 주요 경제·금융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를 분장한다.
1.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서울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2. 국가수사본부 또는 서울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3. 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
⑥ **마약범죄수사대장**은 마약류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를 분장한다.
1.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서울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2. 국가수사본부 또는 서울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3. 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
⑦·⑧ (생 략)

69)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청 등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기준으로 수사의 우선권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여러 수사기관들이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 등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보임.

8)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안 제32조)

제 정 안
제32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중수청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수사기관 및 공소청 소속 공무원과 업무상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중수청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③ 수사관은 검사로부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97조의3, 제245조의8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용우의원안 제32조제1항은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 및 공소청 공무원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범죄가 지능화, 기업화, 국제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범죄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범죄로부터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체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힘을 합쳐 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보임.

이용우의원안 제32조제2항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사건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중대범죄수사청과 다른 수사기관이 효과적으로 사건을 배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참고로,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검사가 경찰청에 송치요구[70]를 한 건은 연 평균 183건이고, 검찰청이 접수한 사건을 경찰청으로 이송한 건수는 연평균 20,364건임.

< 검사의 송치요구 및 검찰청이 경찰청으로 이송한 현황(2021년~2025년)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검사의 송치요구(건)	90	211	203	186	222
검찰청이 접수한 사건을 경찰청으로 이송한 건수(건)	23,967	19,664	18,984	20,882	18,323

자료: 경찰청 KICS

이용우의원안 제32조제2항과 유사한 취지의 입법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이 있음.[71]

70) 경찰청에 따르면,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4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제66조(재정신청 접수에 따른 절차) 등에 따라 송치 요구를 할 수 있음. 경찰청에 따르면, 송치요구 사유별 통계는 구분되지 않음.

7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③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9) 인지 사건의 이첩(안 제33조)

제 정 안
제33조(인지 사건의 이첩) 중수청장은 중대범죄등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이용우의원안 제33조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불송치 결정을 할 때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우의원안 제33조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인지한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여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 간의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임.

이용우의원안 제33조와 유사한 입법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0) 수사관의 범죄에 대한 수사(안 제34조)

제 정 안
제34조(수사관의 범죄에 대한 수사) 중수청장은 수사관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또는 고위

제 정 안
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용우의원안 제34조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수사관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이용우의원안 제34조는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관의 범죄 혐의를 신속하게 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관의 범죄 여부를 신속하게 밝히고, 범죄를 범한 수사관은 중대범죄등 수사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이용우의원안 제34조와 유사한 입법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수사처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1) **형사소송법의 준용**(안 제36조)

제 정 안
제36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면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이용우의원안 제36조는 수사관의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수사관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이용우의원안 제36조는 수사관이 사법경찰관리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수사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12) **직권남용죄**(안 제38조)

제 정 안
제38조(직권남용죄) ①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용우의원안 제38조는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용우의원안 제38조는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이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금지한 제3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이용우의원안 제38조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구성요건은 「형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른 불법체포, 불법감금과 제123조에 따른 직권남용 범죄와 동일한 것으로 보임.[72]

72)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다만, 현행 「형법」 제124조제1항은 불법체포, 불법감금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형법」 제123조는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불법체포, 불법감금을 직권남용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이용우의원안 제38조제1항은 직권남용 행위를 불법체포와 불법감금죄와 함께 규정함으로써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 강화해서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범죄와 형벌의 균형성이 적절히 유지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만일, 이용우의원안 제38조의 규정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현행 「형법」 제124조와 제123조의 경우와 같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행위 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용우의원안 제38조제1항이 적용되는 위반 행위의 주체를 공무원 또는 수사관 등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마. 인사

1) 수사관의 자격(안 제14조)

제 정 안
제14조(수사관의 자격)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2.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사와 관련한 자격이 있는 사람

이용우의원안 제14조는 수사관의 자격으로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수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사와 관련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이용우의원안은 수사 실무 경험이 있거나, 관련 자격을 보유한 사람을 수사관으로 임용하도록 하여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중대범죄등의 수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이용우의원안 제11조와 유사한 입법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수사처수사관)가 있음.[73]

다만,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조직이 활력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경험 및 자격을 갖춘 전문가 외에도 성장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신규 인력을 채용하여, 이들에게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노하우와 가치와 문화를 전수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별도의 자격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채용하는 경로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수사관의 임용**(안 제15조)

제 정 안
제15조(수사관의 임용) ① 수사관의 계급은 중수청장, 차장, 수사1급부터 수사9급까지로 한다. ② 수사1급 이하 수사5급 이상 수사관은 중수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③ 수사6급 이하 수사관은 중수청장이 임용한다.

이용우의원안 제15조제1항은 수사관의 계급은 중대범죄수사청장, 차장, 수사1급부터 수사9급까지 하도록 하고 있음.

이용우의원안 제15조제1항은 수사관을 단일한 구조로 설계함으로써,

7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수사처수사관)** ① 수사처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
1.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2.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40명 이내로 한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③ 수사처수사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로 한다.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인사 운영 과정에서도 연계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임.

다만, 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외부 임용 가능성[74]을 열어둔 것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용우의원안 제15조제2항은 수사1급 이하 수사5급 이상 수사관을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이용우의원안 제15조제2항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 수사1급 이하 수사5급 이상의 수사관을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중대범죄청수사관의 임명에 국민의 뜻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임.

또한,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수사1급 이하 수사5급 이상 수사관을 제청하도록 함으로써, 중대범죄수사청이 기관장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이용우의원안 제15조제2항과 유사한 입법례로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1항 본문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

74) 제정안 **제6조(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명자격)** ① 중수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경찰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용우의원안 제15조제3항은 수사6급 이하의 수사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임용하도록 함.

이용우의원안 제15조제3항은 기관의 장인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기관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유사한 입법례인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에서 경찰청장이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75]

3) 결격사유(안 제17조)

제 정 안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5)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권자) 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②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③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시자(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국가수사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④ · ⑤ (생 략)

이용우의원안 제17조제1호는 는 수사관의 결격사유로 경찰공무원의 결격사유인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하고 있음.[76]

이용우의원안 제17조제1호는 수사관이 수사 업무에 종사한는 점에서 경찰공무원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찰공무원의 결격사유와 동일한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보임.

이용우의원안 제17조제2호는 수사관의 결격사유로 탄핵결정에 의해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정하고 있음.

이는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을 거쳐[77]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에 대해서는

---

76) **「경찰공무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77)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일정기간 공직에 임용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탄핵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용우의원안 제17조제2호와 동일한 입법례로 「검찰청법」 제33조(결격사유)제3호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결격사유 등)제1항제4호가 있음.

4) **당연퇴직**(안 제21조)

제 정 안
제21조(당연퇴직) ① 수사관이 「경찰공무원법」 제27조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당연히 퇴직한다. ② 수사관이 제17조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이용우의원안 제30조제1항은 수사관이 「경찰공무원법」 제27조[78]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음.

이용우의원안 제21조제1항은 수사관이 수사 업무에 종사한는 점에서 경찰공무원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찰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와 동일한

78) **「경찰공무원법」 제27조(당연퇴직)** 경찰공무원이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4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8조제2항제6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당연퇴직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보임.

이용우의원안 제21조제2항은 수사관이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거나,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하도록 정하고 있음.

동 조항은 수사관의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은채 임용이 된 이후에도 해당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함으로써 결격사유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5) **정년**(안 제22조)

제 정 안
제22조(정년) 수사관(중수청장은 제외한다)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이용우의원안 제22조는 중대범죄수사청장 외의 수사관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음.

유사입법례와 비교해보면, 수사관의 정년 60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관과 경찰공무원의 정년과 동일한 수준임.

참고로, 「경찰공무원법」 제30조는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서는 수사처수사관의 정년은 60세로 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74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6) 「경찰공무원법」의 준용(안 제24조)

제 정 안
제24조(「경찰공무원법」의 준용) 수사관의 임용·승진·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중수청장"으로, "경찰공무원"은 "수사관"으로 본다.

이용우의원안 제24조는 수사관에 대해서는 수사관의 임용·승진·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음.

「경찰공무원법」에서는 임용·승진·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과 관련하여 신규채용(제10조), 시보임용(제13조), 승진(제15조), 근속승진(제16조), 교육훈련(제22조), 직권면직(제28조), 징계위원회(제32조), 징계의 절차(제33조), 행정소송의 피고(제34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79]

---

79) 「경찰공무원법」
제10조(신규채용) ① 경정 및 순경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② 경위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한다.
1.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된 사람(이하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라 한다)으로서 교육훈련을 마치고 정하여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경찰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법」(2009년 5월 28일 법률 제97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5. 섬, 외딴곳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6.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7.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임용하는 경우

④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에 대한 제2항제2호의 교육훈련, 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할 수 있는 경찰공무원의 계급,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의 구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 전보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시보임용) ①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및 이 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1.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서 정하여진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을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
2.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위계급으로의 승진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임용예정 계급에 상응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해당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
4.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제15조(승진) ① 경찰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실증(實證)하여 승진임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을 보하는 경우 치안감을 치안총감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② 경무관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여 한다. 다만,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과 승진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승진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승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근속승진)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을 경장, 경사, 경위,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4년 이상 근속자
2.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3.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
4.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8년 이상 근속자

②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한 경찰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이용우의원안 제24조는 임용, 승진 및 신분보장 등에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관에게 적용되는 인사행정이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임.[80]

---

③ 제1항에 따른 근속승진임용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교육훈련)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모든 경찰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경찰공무원으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3.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4. 해당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제1항제2호·제3호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이나 휴직 사유의 소멸일로 한다.

제32조(징계위원회) ①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②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③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구성·관할·운영, 징계의결의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징계의 절차)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다만, 파면·해임·강등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하되,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고,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제34조(행정소송의 피고) 징계처분, 휴직처분, 면직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고로 한다.

80) **「경찰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服務),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 수사관의 파견 금지(안 제29조)

제 정 안
제29조(수사관의 파견 금지 등) 수사관은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다른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이용우의원안 제23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관이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다른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용우의원안 제23조는 수사관이 다른 기관에 파견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중대범죄등 수사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다른 기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8) 공직임용 제한 등(안 제30조)

제 정 안
제30조(공직임용 제한 등) ① 중수청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헌법재판관(「대한민국헌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는 헌법재판관은 제외한다), 공소청장,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의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중수청장, 차장, 수사관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수사관으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④ 중수청에 근무하였던 사람은 퇴직 후 1년 동안 중수청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다.

이용우의원안 제30조제1항은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헌법재판관, 공소청장,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의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용우의원안 제30조제1항은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차장이 퇴임 이후 헌법재판관, 공소청장 등 다른 직위로 임용되는 것을 약속받는 경우에는 중대범죄등 수사 업무의 중립성·독립성·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제한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용우의원안 제30조제1항과 유사한 입법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이 있음.[81]

이용우의원안 제30조제2항은 중대범죄수사청장, 차장, 수사관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용우의원안 제24조는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하는 입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인적 구성 측면에서도 일정 기간 분리하려는 취지임.

유사한 입법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직임용 제한 등)제2항이 있음.[82]

---

8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직임용 제한 등)** ① 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헌법재판관(「대한민국헌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는 헌법재판관은 제외한다), 검찰총장,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의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8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직임용 제한 등)** ②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이용우의원안 제30조제3항은 수사관으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용우의원안은 수사관이 퇴임 이후 대통령비서실에 임용되는 것을 약속받는 경우에는 중대범죄등 수사 업무의 중립성·독립성·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제한하려는 취지임.

유사한 입법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직임용 제한 등)제3항[83]과 「검찰청법」 제44조의2제2항이 있음.[84]

이용우의원안 제30조제4항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근무하였던 사람은 퇴직 후 1년 동안 중대범죄수사청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용우의원안 제30조제4항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근무한 사람이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의 현직 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수사, 기소 및 재판 절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제한하려는 것임.

유사한 입법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직임용 제한 등)제4항이 있음.[85]

---

8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직임용 제한 등)** ③ 수사처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84) **「검찰청법」 제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 ②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8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직임용 제한 등)** ④ 수사처에 근무하였던 사람은 퇴직 후 1년 동안 수사처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다.

바. 부칙

1) 시행일(부칙 제1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용우의원안 부칙 제1조는 제정법률을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되, 제7조(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용우의원안의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정한 것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정부조직법」 제37조제9항과 제10항의 시행일이 2026년 10월 2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동 법률과 시행일을 동일하게 하려는 것임.

이용우의원안 제7조를 즉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준비를 위한 취지임.

2)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부칙 제2조)

부 칙
제2조(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의 임명, 각종 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 및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이용우의원안 부칙 제2조는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의 임명 등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우의원안 부칙 제2조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법 시행일인 2026년 10월 2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를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3) **인사청문 등에 관한 특례**(부칙 제3조)

부 칙
제3조(인사청문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제5조제3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제청하고,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용우의원안안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제5조제3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제청하고,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우의원안 부칙 제3조는 제정법률이 시행되는 2026년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임명되어 중대범죄수사청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4) 공무원의 임용 특례(부칙 제4조)

부 칙
제4조(공무원의 임용 특례) ① 2026년 10월 1일 당시 검찰청 소속 공무원(시보 임용 중인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검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 2. 검찰직렬·마약수사직렬 일반직공무원 및 해당 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제15조에 따른 동일 계급 또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 ②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공소청 소속 공무원(시보 임용 중인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를 포함한다)으로 보는 사람으로서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7년 4월 30일까지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검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 2. 종전 검찰청 소속 검찰직렬·마약수사직렬 일반직공무원 및 해당 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제15조에 따른 동일 계급 또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 ③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임용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을 준용하여 같은 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되, 시험은 면제하고 시보 임용은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부 칙
따른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면제하지 아니하되, 시보 임용은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공무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법률상의 정년에 따른다. ⑥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의 봉급이 임용되기 전의 봉급(임용되기 전의 봉급에는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 등을 고려한 인상분을 반영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임용되기 전의 봉급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임용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임용의 방법·절차, 임용예정직급, 경력인정, 임용되기 전의 봉급, 봉급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용우의원안 부칙 제4조는 2026년 10월 1일 당시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용우의원안 부칙 제4조제1항은 2026년 10월 1일 당시 검찰청 소속 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급의 수사관으로, 검찰직렬·마약수사직렬 일반직 공무원 및 해당 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은 동일 계급 또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이용우의원안 부칙 제4조제2항은 이 법 시행(2026년 10월 2일) 당시 「공소청법」 부칙 제6조[86]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공소청 소속 공무원

(시보 임용 중인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를 포함함)으로 보는 사람으로서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공무원을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이용우의원안 부칙 제4조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임용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을 준용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되, 시험은 면제하고 시보 임용은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이용우의원안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은 2026년 10월 1일 기준 검찰청 소속 공무원과 2026년 10월 2일 기준 공소청 소속 공무원을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속하게 구성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유사한 입법례로 방위사업법이 2006년 1월 제정될 당시의 부칙 제14조는 방위사업청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함.[87]

---

86) **「공소청법안」 부칙**

제6조(조직 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검사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소속 공무원(검사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소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휴직 기간은 종전의 「검찰청법」 제38조의2에 따른다.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1.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검찰청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이 법 시행 전에 검찰청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

87) **「방위사업법」** 부칙 (법률 제7845호, 2006. 1. 2. 제정)

제14조 (특별채용 등의 특례) ① 이 법 시행당시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위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던 군무원을 2006년 6월 30일까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소요근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보임용을 면제할 수 있으며,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이용우의원안안 부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는 검사의 임용 시 직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에서 정할 직급의 대략적인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은데, 해당 사항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인사 제도 설계 및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률 부칙에 대략적인 직급의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현행 「검찰청법」 제6조[88]에서는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두 단계로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차장검사, 부장검사[89], 부부장검사 및 경험이 풍부한 중견검사[90] 등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직급을 결정하는 기준에 검사의 수사 경력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용우의원안 부칙 제4조제4항은 같은 조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의 봉급액이 특별채용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봉급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군무원 중 30년 이상 군무원으로 재직(군인 및 다른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훈장을 수여하기 위하여 재직기간을 산정할 경우 방위사업청에 근무한 기간은 군무원으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8) **「검찰청법」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89)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운영에 관한 지침」(대검찰청예규)

90) **「부부장검사의 인사와 운용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수사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검찰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경력을 쌓아 경험이 풍부한 중견검사를 부부장검사로 근무하게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우의원안안 부칙 제4조제4항은 부칙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 조항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상당직급의 개략적인 범위를 법률 부칙 조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용우의원안안 부칙 제4조제6항은 부칙 제4조제1항제제2호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의 봉급이 임용되기 전의 봉급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임용되기 전의 봉급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임용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우의원안 부칙은 2026년 10월 1일 기준 검찰청 검사와 2026년 10월 2일 기준 공소청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더라도 보수가 삭감되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임.

이용우의원안 부칙 제4조제6항과 유사한 입법례로 공무원보수규정 제6조제3항은 전직하는 사람의 봉급이 전직하기 전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전직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91]

---

91)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6조(강임 시 등의 봉급 보전) ① · ② (생 략)
③ 「공무원임용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직하는 사람의 봉급이 전직하기 전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전직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④ (생 략)
「공무원임용령」 제29조(전직의 요건)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2. 직제나 정원의 개정·폐지로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5조)

부 칙
제5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1.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검찰청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이 법 시행 전에 검찰청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에 대한 임용은 부칙 제4조제3항을 준용하되, 시험은 면제하고 시보 임용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용우의원안안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당시(2026년 10월 2일) 진행 중인 검찰청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이 법 시행 전(2026년 10월 1일)에 검찰청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2026년 10월 2일) 아직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려는 취지임.

이용우의원안 부칙 제5조는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지만, 2026년 10월 1일까지 검찰청이 운영된다는 것을 고려하여, 2026년에 실시되어 진행중인 검찰청 채용 시험의 효력을 인정하고, 동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공무담임권[92]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취지임.

92) 「대한민국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6) 다른 법률의 개정(부칙 제6조)

제 정 안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검사”를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한다. ②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행정안전부 및 중대범죄수사청: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이용우의원안 부칙 제6조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및 「정부조직법」 제2조제6항을 개정하여 특정직공무원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용우의원안 부칙 제6조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특정직공무원으로 하도록 한 이용우의원안 제20조제1항과 관련 법률 조항인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93] 및 「정부조직법」 제2조제6항[94]과의 체계정합성을

93)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94)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⑥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경찰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만 해당한다)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국장은 중앙행정기관마다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1.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외무공무원
2. 법무부: 검사
3.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현역군인
4. 행정안전부의 안전·재난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
5. 소방청: 소방공무원

확보하기 위한 취지임.

이용우의원안 부칙 제6조제2항은 행정안전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는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 행정안전부에 파견될 수 있는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한 것임.

다만, 「정부조직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하는 사무에 수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95] 행정안전부 조직에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직제가 없으며, 2022년에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이 설치되었으나, 2025년 경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 확보[96]를 위해 폐지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7) 다른 법령과의 관계(부칙 제7조)

제 정 안
제7조(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제4조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중대범죄수사청,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95) 「정부조직법」 제37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96)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1009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이용우의원안 부칙 제7조는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법령 포함)에서 제4조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중대범죄수사청,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보려는 취지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5년 10월 1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의 연혁상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청의 사무가 중대범죄수사청에 승계되므로, 기존에 검찰청이 소관한 부령[97]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려는 취지임.

다만, 이용우의원안 부칙 제7조는 2025년 10월 1일 개정된 「정부조직법」 부칙(법률 제21065호) 제8조와 유사한 형태인데, 「정부조직법」 부칙(법률 제21065호) 제8조는 행정기관의 사무가 승계되는 것을 정한 「정부조직법」 부칙(법률 제21065호) 부칙 제2조를 전제로 하고 있음.[98]

---

97)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검찰청이 소관한 부령에는 「검찰근무 규칙」(법무부령), 「검찰압수물 사무규칙」, 「검찰보고사무규칙」(법무부령),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 「검찰보존사무규칙」(법무부령),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법무부령) 등이 있음.

98) **「정부조직법」 부칙(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제2조(조직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승계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3조제1항에 관한 사무	기획예산처장관
기획재정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0조제1항에 관한 사무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8조제1항에 관한 사무	지식재산처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41조제1항에 관한 사무	산업통상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43조제1항에 관한 사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의 소관사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45조에 관한 사무	성평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의 소관사무	성평등가족부장관
통계청장의 소관사무	국가데이터처장
특허청장의 소관사무	지식재산처장

② · ③ (생 략)

이를 고려하면, 이용우의원안 부칙에 「정부조직법」 부칙(법률 제21065호) 제2조와 유사한 형식으로 검찰청의 사무 중 중대범죄수사청에 승계되는 사무를 먼저 특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이용우의원안 부칙 제7조에 규정된 “제4조에 따른 직무”인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는 검찰청 뿐만 아니라 경찰청이 담당하는 사무에도 해당한다는 점에서 현행 문언 상으로는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제4조에 따른 직무”를 “검찰청 소관 사무 중 이용우의원안 제4조에 따른 직무에 해당하는 부분” 등으로 명확히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제8조(조직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의 표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3. 민형배의원안과 이용우의원안의 주요내용 비교·검토

가. 제정안들의 목적, 배경

제정안들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정부조직법」(2025. 10. 1. 개정, 2026. 10. 2. 시행예정) 제37조제9항은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0항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민형배의원안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기 전에 발의되었고, 이용우의원안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후에 발의됨.

나. 제정안들의 구성 및 주요 내용

민형배의원안은 본칙 7장 38조, 부칙 3개 조항으로, 이용우의원안은 본칙 8개 장 38개 조항 및 부칙 7개 조항으로 구성됨.

제정안들의 본칙 조항은 내용을 기준으로 ① 총칙, ② 조직, ③ 직무, ④ 인사로 구분할 수 있음.

제정안들은 ① 총칙에서는 중대범죄의 정의와 권한남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② 조직과 관련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명자격·절차, 지역중대범죄수사청, 수사인권보호관 등을 규정하며, ③ 직무와 관련해서는 수사관의 직무, 수사의 경합,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 등을 규정하고, ④ 인사와 관련해서는 수사관의 임용등, 「경찰공무원법」의 준용을 규정함.

제정안들의 각 조항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음.

< 민형배의원안, 이용우의원안 조항 비교 >

민형배의원안	이용우의원안
1. 총 칙 (중대범죄 정의 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2조(정의) · 중대범죄: 내란·외환,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마약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 중대범죄등, 관련범죄 제29조(관련범죄 범위) 제3조(권한남용의 금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2조(정의) · 중대범죄: 부패범죄, 경제범죄, 마약범죄, 방위사업범죄, 내란범죄, 외환범죄, 수사 및 공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중수청 소속 공무원 제외)이 범한 범죄 · 중대범죄등, 관련범죄 제3조(권한남용의 금지)
2.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제2장 중대범죄수사청 제4조(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등) 제5조(중대범죄수사청장) 제6조(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명자격) 제7조(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 제8조(차장) 제9조(직제)	제2장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및 구성 제4조(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등) 제5조(중대범죄수사청장) 제6조(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명자격) 제7조(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 제8조(차장) 제9조(직제)
제3장 지역중대범죄수사청 제10조(지역중수청장) 제11조(직제) 제12조(수사관) 제21조(정원) 제27조(중대범죄수사청 직원) 제31조(수사심의위원회) 제36조(조직 및 운영)	제3장 지역중대범죄수사청 제10조(지역중수청장) 제11조(직제) 제12조(수사관) 제25조(중대범죄수사청 직원) 제27조(불송치심의위원회) 제28조(수사인권보호관) 제35조(조직 및 운영)

3. 중대범죄수사청 직무	
제4장 수사관 제13조(수사관의 직무) 제16조(수사관의 직무관할) 제18조(수사관에 관한 지휘·감독) 제19조(수사관의 이의제기권) 제25조(정치 관여 금지 등) 제37조(정치 관여죄) 제30조(이의신청) 제33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제34조(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제35조(수사관의 범죄에 대한 수사) 제38조(직권남용죄)	**제3장 수사관** 제13조(수사관의 직무) 제16조(수사관의 직무관할) 제18조(수사관에 관한 지휘·감독) 제19조(수사관의 이의제기권) 제25조(정치 관여 금지 등) 제37조(정치 관여죄) 제26조(이의신청) 제31조(수사의 경합) 제32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제33조(인지 사건의 이첩) 제35조(수사관의 범죄에 대한 수사) 제36조(다른 법률의 준용) 형사소송법 제38조(직권남용죄)
4. 중대범죄수사청 인사	
제4장 수사관 제14조(수사관의 자격) 제15조(수사관의 임용) 제17조(결격사유) 제22조(당연퇴직) 제24조(정년) 제26조(「경찰공무원법」의 준용) 제28조(수사관의 파견 금지 등) 제32조(공직임용 제한 등)	**제3장 수사관** 제14조(수사관의 자격) 제15조(수사관의 임용) 제17조(결격사유) 제21조(당연퇴직) 제22조(정년) 제24조(「경찰공무원법」의 준용) 제29조(수사관의 파견 금지 등) 제30조(공직임용 제한 등)
5.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중수청 설립에 관한 준비행위) 제3조(조직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시행일) 제2조(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제3조(인사청문 등에 관한 특례) 제4조(공무원의 임용 특례) 제5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7조(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 민형배의원안과 이용우의원안의 주요 내용 비교·검토

민형배의원안과 이용우의원안은 중대범죄의 범위에 공직자범죄, 선거범죄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음. 이용우의원안은 중대범죄등의 범위를 부패, 경제, 마약범죄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역량을 집중하려는 취지로 보임.

민형배의원안과 이용우의원안의 공통점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경찰청장 및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제4호의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동 규정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 시 수사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려는 취지로 보임.

민형배의원안과 이용우의원안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수사6급 이하의 수사관을 임용하도록 하여 중대범죄수사청에게 인사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리고, 민형배의원안과 이용우의원안은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내용이 유사함. 두 법률안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불송치 결정을 하는 때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하며, 수사관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이용우의원안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청의 수사가 경합하는 경우 현행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와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범죄사실에 대해 영장을 먼저 신청한 수사기관에 수사의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수사범위의 중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민형배의원안과 이용우의원안은 수사관과 검사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검사로부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민형배의원안과 이용우의원안은 「형사소송법」과 별도로 중대범죄수사청의 불송치결정에 이의가 있는 고소인이나 고발인 등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이의신청의 심의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심의위원회 또는 불송치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문 의 처
02) 6788-5345